

# 건축교육 및 건축사제도 개선을 위한 1차 공청회

## A Public Hearing on Architecture Education and License System

대한건축학회와 건설교통부,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공동주최하는 '건축교육, 건축사제도 개선 및 건축교육인증원 발족을 위한 1차 공청회'가 지난 11월 19일(금)과 20일(토)에 대한건축학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건축교육, 설계실무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건축교육의 국제화 및 국내건축사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주요명제하에 건축 3단체가 공동으로 준비하였다. 이번 공청회의 좌장은 이명호(중앙대 건축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교육제도 개선 및 교육인증」에 대해서는 이문섭, 박한규씨가, 「건축사제도 및 건축사보완」에 대해서는 최관영, 박서홍씨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강병근(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우성(아키텍플랜 대표), 정의용(영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영근(건설교통부 건축과 과장), 정진원(경기대 건축공학과 교수), 최수태(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김광현(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김병현(장건축), 김영웅(진원건축), 심재덕(태두건축), 정태화(건설교통부 건축과 사무관), 최동규(서인건축)씨가 참여했다. 이번호에서는 건축교육제도 개선분야, 건축교육인증분야, 건축사제도 및 건축사보완 분야의 발표요약문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 건축교육제도 개선분야

#### On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e Education System

책임연구원: 이문섭

연구원: 임창복, 제해성, 이연구

건축은 우리의 삶을 담은 공간을 창조하는 분야로서, 예술, 인문사회 그리고 기술의 총합체이며 또한 시대적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건축교육은 건축사와 건축기술자를 동시에 양성하는 이원적인 교육목표하에 많은 건축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 개발과 해외의 건설수출에 큰 기여를 하여왔다. 그러나 개방화와 국제화, 그리고 독자적인 건축문화 창달의 요구가 높아진 현 시대적 상황하에서 더욱 전문화되고 창의적인 건축인력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대한건축학회를 중심으로 건축교육 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대부분 구체적인 실천에 이르지 못한 채 제안이나 실험적 시도로 그치고

말았다. 더욱이 1996학년부터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의 일환으로 학부제가 실시됨에 따라 대학에서 건축(공)학과는 타의에 의해 인접학과와 통합되는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건축전문인력 배출이라는 건축교육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건축교육문제가 모든 건축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WTO체제 출범에 따른 전문인력의 국제적인 상호인정과 국제경쟁력 제고의 요구는 건축사와 건축기술자의 자격과 그에 요구되는 건축전문교육의 수학적한과 교육프로그램, 교육환경 등에 일대 혁신을 요구하게 되었고, 정부로부터 건축교육의 전문성과 독자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하여 건설교통부의 "건축사자격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건축사자격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대학건축교육제도의 개선방향과 건축교육인증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건축분야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경쟁력 제고와 국제적인 상호 인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수없이 논의되어온 우리 건축교육계가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을 정리하면 ① 학제상의 문제, ② 교육과정의 획일화, ③ 자격시험제도의 문제, ④ 건축설계 교육의 문제, ⑤ 교육환경의 낙후, ⑥ 건축교육에 대한 장기적

비전의 부재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건축사자격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중 건축교육제도 개선분야에 있어서는 건축설계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 동향 분석과 함께 외국의 건축교육제도와 국내 건축교육현황을 비교 고찰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축학 교육제도의 개선방안과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건축학 교육은 UIA(국제건축가연맹)가 WTO로부터 위임받아 제시한 5년 이상의 교육연한을 이수하여야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건축교육은 공과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건축(공)학과에서 4년제의 학제로 건축사와 건축기술사의 동시양성이라는 교육목표하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국제적 건축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연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건축학교육과 건축공학교육을 분리하여 시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국 건축대학 또는 건축학부에 있어서도 건축사 양성을 위하여 5년제의 건축학부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건축학부 4년제와 대학원 석사과정 2년제(4+2)를 운영하는 대학이 있고, 또한 건축비전공자가 건축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건축비전공학과 4년 + 건축전문대학원 3년제(4+3)를 시행하는 대학이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경기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이 건축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 건축교육상황을 고려하여 건축학개선안 학제의 모델로서 ① 건축학부(과)5년제, ② 건축학부(과)4년제 + 석사과정 2년제(4+2), ③ 건축비전공학과 4년제 + 건축전문대학원 3년제(4+3)를 제안하고 있으며, 학위명칭도 건축학사(B.Arch) 또는 건축이학사(B.S.Arch), 건축석사(M.Arch), 건축학박사 또는 Ph.D.를 제안하고 있다.

건축학과의 교육은 건축설계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도시, 조경, 시각디자인 및 사회학 등이 연계되어 교육되어야 하는 바, 실무감각과 현장경험이 필수적인 건축설계교육에서 교수들의 실무참여와 실무건축사의 설계교육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건축학교육의 인증평가제도에서는 건축교육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고 기본적 지식, 설계, 커뮤니케이션, 실무실습 등으로 구분한 수행평가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건축학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축학전공 표준교과과정(안)을 위의 3가지 모델별로 제안하여, 각 대학에서는 그간의 건축교육전통의 바탕 위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교과과정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 건축교육인증분야

### Accreditation on Architecture Education

책임연구원: 박한규  
연구원: 전성남, 김형우

오늘날 세계를 지배할만큼 막강해진 미국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미국의 각 전문 연구기관들이 제출한 보고서의 종합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자본, 국민총생산(G.N.P.), 공업화, 문화수준, 그리고 인구조정 등 모든 선진국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진 조건 가운데에서도 미국만은 유독, 공업화의 정책을 제일 우선으로 삼아왔다는 점과 공업화가 잘 추진 될 수 있었던 제일의 근간은 튼튼한 공학교육체제였으며 공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제일의 요체가 바로 교육 평가의 방법으로서 인증제도( accreditation)를 수행해 왔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된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는 이 인증 제도에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한편 미국은 자신들의 이와 같은 장점을 최대의 무기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정신에 반영시킴은 물론이거니와 쌍무간 협상에서 제일의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나라도 W.T.O.의 회원국이 되어버린 이상 궁극적으로 이제 이 인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설계의 국제 시장 개방 압력에 무릎 꿇고 말 것이며 따라서 우리에게 부닥칠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에서도 1999년 8월 30일을 기하여 한국 공학 교육 인증원(A.B.E.E.K.)이 설립되었으며 우리 건축 교육 분야도 15개의 공학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일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의 이념, 교육편제, 교육연한, 수여학위, 교과과정, 교육시설 및 환경, 그리고 입학 및 졸업 조건 등 건축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 제도에 커다란 모순을 안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국제건축사협회(U.I.A.)의 교육 조건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A.B.E.E.K.의 교육 인증 규정이라든가 평가 기준에 불합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매우 때늦은 감은 있지만 하루 속히 건축 교육 인증원을 설립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해냄으로서 건축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건축설계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한다.

• 건축 교육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제건축사협회(U.I.A.)의 교육기준 및 유네스코(U.N.E.S.C.O.)의 건축 교육 현장을 비롯해서 모범적인 몇 개국의 인증 기준에 관한 자료 검토와 연구 분석을 수행한다.

• 우리 나라의 건축 교육 제도 및 건축사 자격 제도상의 미비점과 모순점을 파악하여 국제 상호 인정 수준에 상응하는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 인증기준에 관해서 연구한다.

•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증원의 설립 주체 및 인증원의 조직과 재정의 근거에 대해서 연구한다.

• 인증원의 설립을 위해서 인증원의 정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 인증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인증 사업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인증연구 지원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그리고 인증 사무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해 연구한다. • 인증 대상, 인증 단위, 인증 기준, 인증 지침, 인증 판정,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이 인증원에 보고해야 할 사항 및 인증 절차 등 인증원의 인증규정에 관해서 연구한다.

연구 내용의 요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은 인증 기준에서 인증 가능한 프로그램의 종류 즉, 인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최소 5년 이상의 교육 연한이 요구되는 학부 과정 전문학위 프로그램, 건축 관련 (공)학사 학위 취득 후 최소 2년 이상이 요구되는 대학원 과정의 전문학위 프로그램, 건축 비관련 학사 학위 취득 후 최소 3년 이상이 요구되는 대학원 과정의 전문학위 프로그램 등과 같다. 그리고 교과 과정 교육 수행 기준으로서 51가지의 구체적인 이해와 능력이 요구되지만 표현 능력, 설계 능력,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 건축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건축 설계 실무에 대한 이해 등 5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표현 능력에서는 언어적 표현과 시각적 표현 능력을 개발시켜야 할 것이며 설계 능력에서는 창의력과 종합 능력을 개발시켜야 한다.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로서 역사, 건축론, 인간과 사회의 요구 등이 필요하고 구조, 환경 조절, 시공, 재료 등 건축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끝으로 건축 경제, 프로젝트 프로세스, 건축사 사무소 경영 기술, 법규 및 제도 등 실무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인증원의 인증 규정에서는 14가지의 규정 항목이 주어지고 있으나 요점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술한 인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건축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설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증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하는데 그 인증 단위는 교육 행정 단위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단위로 하며 인증원의 인증 규정과 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기준이 만족될 때 인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증 판정에는 5년 만기 인증, 3년 유효 인증, 2년 유효 인증, 인증 불가 등 4가지의 판정 기준에 의한다. 동시에 교육 프로그램이 인증원의 인증 판정 결과에 불만을 가질 경우 항소를 제기 할 수 있으나 만약 인증 유효기간 인증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인증원은 인증 결과에 대해서 해당 교육 기관에 고지하고 또 각종 해당 기업체들로부터 교육 기관들의 인증 결과를 요청해 오면 인증원은 응답해 줄 따름이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이 인증원에 보고해야 할 11가지의 사항 가운데 몇 가지 요점만 들여보면, 간단한 교육 기관의 발전 계획 등 소개,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방향, 발전 계획 소개, 교육과 학문 특성, 교육과 학생, 졸업생의 건축사 등록 현황, 교육과 전문성, 교육 프로그램 자체 평가서, 각종 시설 환경 등 물리적 자원, 교수 직원 등 인적 자원 및 그 개발 대책, 정보 자원 및 시설, 행정 조직 등이다.

넷째, 인증원의 인증 절차에 대해서 보면, 어떤 교육 기관으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으면 평가단을 구성하고 교육 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체 평가서를 검토하며 필요시 방문 평가를 수행하는 등 3단계로 이루어진다. 이상의 인증 절차 일반 규정 외에 24개 항목의 인증 세부 규칙을 수립한다.

다섯째, 이상과 같은 교육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한국 건축학 교육 인증원(가칭)”을 설립한다. 그러기 위해서 총칙, 회원, 임원, 이사, 감사, 총회, 이사회, 조직, 회계, 해산 등 제 8장에 걸친 인증원의 정관과 인증 사업단 운영 규칙, 연구 지원부 운영 규칙, 사무국 운영 규칙 등 제 7조에 걸친 인증원의 운영 규정, 그리고 제 6-10조에 걸친 인증원의 운영 세부 규칙 등을 수립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국립 건축 인증원(N.A.A.B.)이라든가 영국의 왕립 건축사협회(R.I.B.A.)등 세계적으로 그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건축 교육 인증 제도를 토대로 연구한 우리의 제정(안)이 수립되고 있다. 인증원의 인증 규정을 비롯해서 건축 교육 프로그램 인증 기준의 내용은 우리 나라 건축 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국가간의 쌍무 협상에서도 손색이 없는 대안이 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인증 규정과 인증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건축사협회(U.I.A.)의 건축교육조건에 합당한 최소 5년 이상의 교육연한이 우리 나라의 건축교육기관에서 확보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 건축사제도 및 건축사보완 분야

## Architecture License System and its Modifier Methods

건축사제도분야

책임연구원: 최관영

연구원: 최영집, 이관영

건축사보완분야

책임연구원: 박서홍

연구원: 김영섭, 김지덕

1999년 6월 제21차 북경 UIA 총회에서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기준, 즉 건축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건축실무에 관한 전문성의 국제권장기준에 관한 UIA 협정}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권고안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161개 지역, 국가 단체의 회원이 참석하여 연구와 토론을 거친 끝에 확정된 것으로, 우리나라도 지침안 작성의 주체적 입장이지, 결코 결과를 권고받거나 강요받는 수동적 입장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권장지침이 우리로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하여 연구되어 오던 (건축사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견)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받아들여 우리 건축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일대 변혁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 1. 상호인정과 관련한 주요사항

구 분	우리나라 제도를 상대국이 받아들일도록 하는 경우	외국의 자격자를 받아들이는 경우
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의 Scheme</li> <li>우리측이 발행하는 증명의 주체, 절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의 Scheme</li> <li>우리측에서 받아들이는 주체 절차</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기간/연한</li> <li>교육과정의 내용</li> <li>비대학 수료자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기간/연한</li> <li>교육과정내용</li> </ul>
인정/인가/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식의 3자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인가?</li> <li>도입할 경우 인증의 주체, 인증기준, Scheme</li> <li>기본적으로 현재제를 답습한다면 어찌되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과정전체의 내용, 수준의 평가 방법</li> <li>개인의 이수증명방법, 확인주체/방법</li> </ul>
인턴/훈련/인턴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턴기간</li> <li>현재의 인턴도 통산할 것인가?</li> <li>인턴내용/수준</li> <li>내용의 증명방법/주체</li> </ul>	
전문능력의 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험의 수준</li> <li>시험의 내용</li> <li>시험없는 제도(독일, 프랑스) 경우의 대응</li> <li>자격에 따른 업무범위가 다른 경우 부족한 능력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런대로 범위가 적은 쪽에 맞출 것인가 (업무한정면허방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험의 수준</li> <li>시험의 내용</li> <li>시험없는 제도(독일, 프랑스) 경우의 대응</li> <li>자격에 따른 업무범위가 다른 경우 부족한 능력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런대로 범위가 적은 쪽에 맞출 것인가 (업무한정면허방식)</li> </ul>
등록/면허/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능력의 증명/보증이란 관점에서 현행 면허 등록제도대로 좋은가? (예: 미국NY주에서는 면허는 종신이나 업무를 하기위한 등록은 갱신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면허/증명의 방법, 주체</li> </ul>
등록/면허/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 등에 관한 증명방법/주체</li> <li>업무를 하기 위한 건축사사무소 제도와의 관계</li> </ul>	
계속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느정도의 의무사항으로 할 것인가</li> <li>계속교육의 내용</li> <li>계속교육이수증명의 방법, 주체</li> <li>면허와 등록의 관계(갱신제도 도입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속교육의 내용</li> <li>계속교육이수 증명방법, 주체</li> </ul>

기타

- 제도개선 이전에 자격을 획득한 기존건축사에 대한 문제
- 시험대기자에 대한 문제

### 2. 상호인정을 위한 제도개선의 기본방침

상호인정은 2국간 또는 다국간의 교섭을 통하여 성립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 아래와 같은 방침에 따르기로 한다.

- 투명성: 국내외의 제도를 비교하여, 투명성과 제3자성을 가진, 이해하기 쉬운 절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다.
- 공정성: 양국간 혹은 다국간에 공평하게 합의되고, 우리나라의 발주자, 소비자, 설계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특히 업무권한이 서로 다른 경우에 유의한다.
- 상호호혜성: 양국간 혹은 다국간에 서로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연성: 장래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현 제도와 유연한 대응성을 갖는 내용 체제로 구성되어야 함은 물론, 수시로 재평가를 거쳐 개선한다.
-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우리나라제도의 장점, 독자성을 살리면서, 국제기준(UIA기준, UNESCO 교육현장 등)과 정합성을 갖도록 한다.
- 자격제도와 각 과정의 상호통용성: 자격제도의 상호통용은 물론, 교육, 인턴과정, 계속 교육 등 각각의 과정도 국제적으로 통용 또는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

### 3. 주요 내용

#### 3.1 인턴제도

건축사가 되기 위하여는 정규적인 건축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일정기간의 인턴기간을 통하여 실무적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여야 하고, 또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턴제도는 오래전 부터 내려오던 '도제식 교육'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건축교육이 대학이라는 정규교육제도에 편입된 이후에도 인턴이라는 '도제식 교육'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본질적으로 우수한 건축사를 양성하는 책임이 선배 실무건축사에게 있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가 지금처럼 단순히 건축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으로 인식한다면 개인적, 국가적인 시간낭비일 뿐 아니라 건축사의 자질향상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인턴과정은 정규교육을 이수한 이후의 과정이므로 인턴과정에 선행하여 국제기준에 적합한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확립이 선결문제이나, 연구의 편익상 교육제도가 UIA권장기준과 동등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제도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새로운 인턴제도(안)를 제안하였다.

#### 3.2 건축사시험제도

표 2. 2001~2008년까지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 시안

건축사 자격시험			건축사 예비시험			비고	
과목	출제범위	출제방법	과목	출제범위	출제방법		
건축법규	건축법	오픈북 (자료소지) 객관식을 원칙 구성비 20%	건축계획	건축환경원론 및 건축설비	5%	건축사 자격시험 에서 경영관리는 2005년 부터시행	
	건축시법			건축계획각론	10%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도시계획및단지계획및 조경디자인	10%		
경영관리	사무소 경영관리	인터뷰/면접 10%	건축이론및 건축사	서양건축사	5%		구성비 10%
	윤리			한국건축사	5%		
기본계획 (II) 및 건축설계	기초계획및대지계획 설계설명서(에세이/설계 개념스케치/구조및설비에 관한 개괄설명 포함)	실기 구성비 40%	건축구조	일반구조의 이해	10%		구성비 15%
	투시도(프리핸드)			철근콘크리트구조 구조철골구조 구조역학	5%		
	배치도	실기 구성비 30%	건축시공	사공일반 건축재료	5%	구성비 10%	
	평면도			건축적산 공사관리	5%		
	입면도 주단면도 단면상세도			기본계획(I) 및건축디자인	실기(free hand)		40%

※ 장기적인 대안으로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건축사 자격시험만을 시행한다.

#### 3.3 면허와 등록

(1) 건축사 면허와 등록의 개념을 단일화하고, "건축사" 칭호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자격 및 업무등록제의 개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즉 지금까지의 면허시험이란 개념을 등록자격시험으로 보고, 시험에 합격한 자는 어디까지나 등록자격시험 합격자이지 건축사가 아니다. 등

그림 1. 건축교육-인턴-건축실무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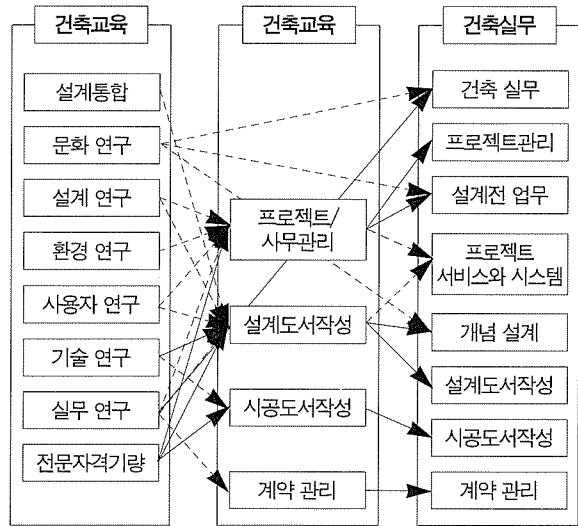


표 1. 각국의 인턴과정 비교

	UIA지침	영국	미국	일본	중국	한국
기간	2년(3년)	2	3	2	3	5
내용규정	○	□	○	×	○	×
운영기관/위원회	×	○	○	△	○	△
기록관리기관	×	×	○	△	○	△
교육책임자	○	○	○	×	○	×
조연자	×	○	○	×	×	×

비고1: 관리기관에서 △은 경력관리기관임.

비고2: □은 기록양식의 내용에 근거함(다른 나라의 경우 별도의 규정에 의거함).

비고3: 일본은 현 제도에 근거함.

록자격시험합격자는 등록을 함으로써 건축사가 될 수 있다.

(2) 호칭의 사용과 업무권한을 일원화하게 되면 현행 건축사법 상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는 용어는 계속 존치될 필요가 없으며, 등록의 갱신도 현재와 같은 단순 행정위기가 아닌 자격의 지속적 유지 및 개발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갖게 된다.

(3) 건축사의 등록제도를 개인등록으로 전환하는 것은, 앞으로 상호인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의 진입문제에서도 문제가 될 사항이므로 미리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업무 형태는 국내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현재 건축사법에 규정되고 있는 건축사협회의 설립과 회원가입에 대한 의무규정은, 면허와 등록제도가 개선되면 건축사를 대표하는 민간의 자율적 기구로 발전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건축사법에서 규정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건축사의 등록과 갱신에 관한 업무는 건축사의 업무와 관련된 해당 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며, 등록 및 갱신에 관한 실제적인 업무는 여러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건축사등록위원회(가칭)와 같은 민간단체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6) 또한 정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할 경우, 계속교육을 등록갱신의 의무요건으로 함으로써, 건축사의 자질과 능력을 유지하고 계발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 3.4 건축사 업무제도

(1) 오해소지가 있는 규제성격은 정리되어야 한다.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 97년 여름('97 USTR)호에서 한국에 대한 사항은 "한국의 법과 규제는 너무 포괄적(inclusive)이고 임의적이다. 시장의 접근, 진입에 제한적이다. 너무 많은 법률과 규정, 암묵적인 행정지도, 자의적인 법해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 건축사업무에 대한 통합규정을 제정한다.

건축사단체 등의 자율적 규정이나, 건설교통부규정으로 건축사업무를 규정하고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준하는 규정의 신설과 여러개로 분할규정된 건축설계도서 작성기준을 통합 한다.

(3) 건축설비 관련 규정의 통합이 필요하다.

각 법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설계와 공사감리규정의 기술적 규정은 각 법에 의한다고 해도 최소한 건축설계 착수단계에서 시공과 사용검사까지는 한 곳에서 종합조정 할 수 있는 법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건축설계가 따르지 않는 수리나 유지관리는 각 법의 규정에 존치시키되, 건축설계가 따르는 규모의 설계나 공사감리업무는 건축사의 조정에 의하도록 각법의 규정을 조정 한다.

(4) 건축사의 업무를 세분화 하고, 정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책임소재에 의한 분규를 명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5 계속교육

건축등록위원회에 소속된 계속교육(CPD)위원회는 전세계 계속교육(CPD/CES)위원회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건축사의 기본요건과 프로페셔널리즘을 평생교육의 근간으로 정보 지식의 미래형 프로그램과 안전, 보건, 복지의 공공성 프로그램으로 건축사들을 계속 교육함으로써 스스로의 경력개발에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계속교육의 결과는 평가되고 기록되어야 하며, 등록갱신의 의무요건으로서 권장되어야 한다.

### 3.6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까지의 경과조치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도 국제기준과 동등성을 갖는 제도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아무런 조건 없이 상호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 실시 되도, 새로운 제도에 의한 건축사가 배출되기까지는 빨라도 8~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상호인정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우리나라 건축사가 상대국의 인정을 받으

려 하는 경우

- 제1안- 협상당시 면허를 소유한 건축사 전문을 인정대상으로 한다. 각국의 특성과 실정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폭넓게 상호인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WTO의 기본자세라면 상대국의 자격제도를 인정하여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시험이나 자격요건에 제한이 없이, 상대국의 건축사 자격을 인정하고, 법규 등 필요한 시험 또는 면접을 통하여 상호인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교육제도를 비롯한 여러 요건이 UIA기준에 미치지 못한 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상대국으로부터 합의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제2안- 동등성의 자격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건축사를 선별 심사하여 우선적으로 협상에 응한다.

이는 1인이 벽에 부딪힌 경우 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교육이수정도를 비롯하여 실무경력, 직업인으로서의 윤리, 인격적 소양 등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가하여 국제기준과의 동등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담심사기구가 필요함은 물론이거니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대국과 합동으로 심사 증명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일단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명을 취득한 후에는 상대국의 부가조건에 따라 법규 등에 대한 시험 또는 면접을 거쳐 상대국의 건축사 등록자격을 갖는다. 이 경우 심사에 응하지 않거나 동등성 증명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부분에 대한 보완등을 통하여 재심사를 받거나, 국내 업무에 한하여 종전과 동등한 자격을 갖고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는 상호인정이 상대국의 건축사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 것이라는 전제로 한 것으

로, 만일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세계적으로 상호인정이 폭 넓게 진행되어, 새로운 건축사자격(편의상 {상호인정건축사}라 한다)면)이 일반화 됨으로써, 국내 설계업무에 까지 자격시비가 생긴다면 문제가 될 것이나 지금의 정보로는 그러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여러 관계자들은 궁극적으로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자격기준에 의한 건축사}가 세계시장을 지배할 것이라 보고 있으나 그 정확한 시기는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도 제도개선을 통한 {세계적으로 통일된 자격기준에 의한 건축사}의 배출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상대국건축사가 우리나라 건축사 자격을 갖으려 하는 경우

- 제1안-상대국 건축사 전원을 인정한다: 이는 우리 경우의 1안과 평등성을 갖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 제2안- 상대국의 건축가제도가 UIA Architect 권장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건축사취득을 희망하는 상대국의 건축가는 상대국의 자격증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또는 새로운 관리기구)에게 등록을 신청한다. 필요한 부가 기준에 대한 시험, 또는 면접을 거쳐 건축사 등록자격을 취득 할 수 있다.

- 제3안- 상대국의 건축사제도가 UIA Architect 권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건축사 면허취득을 희망하는 상대국건축사는, 우선 상대국 내에서 (UIA- Architect 권장기준과 동등수준)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아 증명을 받는다. 이 경우 역시 합동 증명기구를 운영해도 무방하다. 증명을 받은 상대국의 건축가는 (1)과 같은 절차를 거쳐 건축사 등록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3) 시험대기자에 대한 경과조치

시험대기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향후 새로운 제도에 의한 건축사가 배출되는 8~10년동안은 기본적으로 현행시험제도(시험의 형태와 내용은 바뀔 것이나 시험자격은 현행과 같다. 다만 기술자격보유자에 대한 건축사시험 수험자격부여는 본 개선안이 시행되는 시점 현재의 합격자에 한한다.)에 따르거나, 대학원 진학 등을 통한 요건의 충족으로 직접 {세계적으로 통일된 자격기준에 의한 건축사}로 배출 될 수 있다. 물론 전자의 경우는 현행 기존 건축사에 대한 경과 조치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고, 후자 역시 심사를 받기는 하지만,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별 문제없이 심사에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후자의 경우를 위하여는 인턴제도가 시급히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인턴제도의 시행을 위하여는 인턴제도를 담당하기 위한 전담기구와 인턴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자격있는 건축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인턴제도를 위한 기구의 설립과 자격있는 건축사의 선정방법은 따로 논하기로 한다.

#### (4)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한 제도적 구제방법은 일단 새로운 교육 제도에 의하여 흡수, 정비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새로운 교육제도만으로 흡수, 정비되지 못하는 인력은 앞으로 시험자격이 바뀌는 8~10년 사이에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긴 기간을 경과기간으로 둔 것은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산업의 인력수급으로 보더라도, 5년제(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프로그램) 이외에는 무리하여 건축사를 지향하지 않더라도, 여러 분야에서 건축에 기여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본다.

### 4. 맺는말

어느 경우건 제도의 개혁은 막대한 대가를 치루게 마련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서의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외면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정부 관련부처는 제도의 개혁에 뒤따르는 법규의 제정 등으로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여러 교육기관은 교육제도의 개혁으로 재정적,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교육계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이며, 이런 저런 관리기구의 설립도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기존 건축사들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제도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계속교육이 그렇고, 상호인정을 받기 위한 과정이 그렇다. 그러나 이 모두가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일이고,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한 일임에 나와 내가 따로 일 수 없다. 더구나 이 모든 조치가 전문직으로서의 건축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이라면, 누구보다 건축사가 앞장서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하여는 자기 삶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이 고객으로부터 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전문인으로서 다시 설 수 있을 것이다. 행여 이러한 제도개선에 일부 부적격한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정진하여 기준에 적합한 전문인으로서 새로 태어날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개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매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제도란 새로 만들기보다 고치기가 더 힘들기 때문이다. 본 발표에서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8~1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 것도 그런 때문이다.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신중을 기함으로써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치지 말아야 한다.